

| 지방재정법제이슈 22-20-㉓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의 법적 과제

김 남 옥 송원대학교 교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의 법적 과제

김 남 욱 송원대학교 교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의 법적 과제

CONTENTS

Part

I

들어가는 말 | 6

Part

II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의 필요성 | 10

1. 반려동물의 복지향상 | 10
2. 반려동물 보유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사회인식 변화 | 10
3. 지방자치단체의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자원충당 | 11
4. 반려동물 보유억제 | 11

Part

III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입법례 | 14

1. 미국의 반려동물 보유세법 | 14
2. 독일의 반려동물 보유세법 | 15
3. 네덜란드의 반려동물 보유세법 | 17
4. 시사점 | 17

Part

IV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법적 과제 | 20

1. 반려동물 보유세 과세대상과 공평과세 확보 방안 | 20
2. 지방세법을 통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 22

참고문헌 | 24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의 법적 과제**

Part

I

들어가는 말

Part I

들어가는 말

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라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방재정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반면,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인 가구원의 경우에 반려동물의 수가 51.1%이상 차지하고 있고, 반려동물¹⁾과 유기동물의 증가에 따라 반려견의 휴게 공간의 마련, 유기견 보호관리 등의 재정 부담 가중²⁾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와 책임성 강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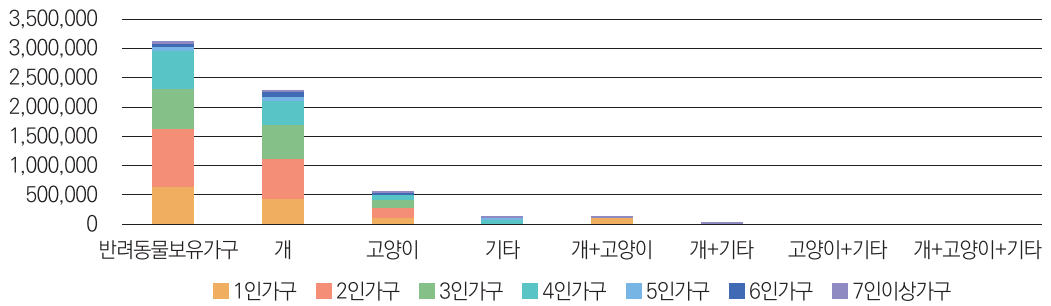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반려동물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한 국가의 동물보호 및 복지재정예산이 증대되고 있고, 그에 상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문제되고 있다. 국가는 동물보호법 제4조에 의한 제2차 동물복지종합 계획에서는 2022년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 동물

1)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은 2015년 457만 가구 → 2017년 593가구 → 2018년 511가구 → 2019년 591가구 → 2020년 638가구이며, 그중 반려견은 521만 가구에서 602만 마리(81.6%), 반려묘는 182만 가구에서 258만 마리(28.6%)를 기르고, 그밖에 관상어, 햄스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전국 638만가구에서 반려동물 860만 마리 키운다-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 발표 -, 보도자료, 2021.4.23., 2면).

2) 2019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서 2019년 구조되거나 보호된 유실, 유기동물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약 13만 마리고, 구조·보호와 관리 비용은 2018년 대비 15.8% 증가한 232억원으로 나타났다(황원경, 손광표, 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 -반려가구현황과 노령견 양육실태-,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14면),

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이다.³⁾

[그림1] 2020년 가구원별 반려동물보유현황



독일,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생후 3개월 내지 6개월 이상된 개를 보유한 주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견의 보유 수와 반려견인지 맹견인지에 따라 정액 세율로 견세를 부과하고 시각장애인 인도견, 경찰견, 구조견은 면세 또는 비과세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의 필요성과, 외국의 입법례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강구한다. 또한 반려동물 보유세의 지방세법에 도입방안을 강구하고, 반려동물의 보유세의 도입에 따른 반려견등의 보유자에 대한 조세저항과 견세 부과의 입법자의 재량문제, 다른 반려동물에 대한 조세형평확보방안에 관한 법적과제를 검토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는 로드맵 마련 -, 보도자료, 2020.1.15. 24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의 법적 과제**

Part
II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의 필요성

1. 반려동물의 복지향상
2. 반려동물 보유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사회인식 변화
3. 지방자치단체의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자원충당
4. 반려동물 보유억제

Part II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의 필요성

1. 반려동물의 복지향상

독일 기본법제20a조에서는 “국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으로서, 헌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입법을 통하여 그리고 법률 및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과 사법을 통하여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라고 규정하여 동물권을 인정하고 있고, 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개를 보유한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견세를 부과징수하고, 징수된 견세의 재원은 모두 반려견의 복지향상에 사용되고 있다. 견세로 인하여 개의 리드를 부착한 견 보유자와 반려견은 대중교통을 어린이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고, 쇼핑몰등도 반려견과 함께 거닐 수 있다.⁴⁾

2. 반려동물 보유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사회인식 변화

최근 반려동물을 쉽게 입양하여 키우다가 반려동물이 병들거나 노령화된 반려동물에 대한 치료비등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으로 유기되거나 실종된 반려동물이 증가되고 있다. 반려동물의 보유에 대한 조세부과는 반려동물을 키우기로 결정할 때부터 사람들에게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4) 회원국으로 여행하는 개, 고양이 또는 흰족제비는 다른 무엇보다도 규정에 따라 채택된 광견병 이외의 질병 또는 감염에 대한 예방적 건강 조치를 준수함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동반해야 한다(Regulation (EU) No 576/2013).

을 가족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게 된다. 반려동물의 유기의 직접적 원인은 반려동물 보유세가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반려동물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재원충당

반려동물의 증가는 반려동물보호 및 편의시설 인프라 구축과 반려동물 보호센터 설치운영, 반려동물의 민원처리, 의료비 부담 완화, 반려동물보호·복지의 교육홍보, 유실유기동물관리개선, 동물보호복지실태조사, 실외견·묘의 중성화 수술 등의 사회적 비용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함으로써 그 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2015년 동물보호복지예산은 14억 95,000만원이었는데, 2019년에는 135억8000만원, 2022년에는 262억 3,100만원으로 2015년대비 17.54배 증가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의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사업규모에 따라 광역과 일반으로 구분하고, 광역은 총사업비 40억원기준 국고보조율 40%, 일반은 총사업비 20억원기준 국고보조율 30%를 지원하며, 2022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11억 6,700만원이 증액된 46억 9,300만원을 편성하고 있다.⁵⁾ 동물보호센터 설치 광역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재원의 60%를 자체부담하여야 하고, 동물보호센터 설치 일반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재원의 70%를 자체부담하여야 한다.

4. 반려동물 보유억제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개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높은 세율로 부과징수하여 과도한 반려동물보유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개를 3마리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1마리 또는 2마리 소유한 자보다 고율의 세율을 부과징수하고, 개를 2마리 소유한 경우에는 1마리 소유한 자보다 고율의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개 소유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높게 하여야 한다.

5)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 54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의 법적 과제**

Part
III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입법례

1. 미국의 반려동물 보유세법
2. 독일의 반려동물 보유세법
3. 네덜란드의 반려동물 보유세법
4. 시사점

Part III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입법례

1. 미국의 반려동물 보유세법

미국 인디애나주법에서는 생후 6개월 이상된 개에 대하여 개의 소유자와 관계없이 카운티에서 개를 키우거나 은닉한 경우 건 당 연간 5달러(\$5)의 조세를 관할 카운티의 재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IC 6-9-39제2조,제3조(a)). 사육, 탑승, 훈련 또는 판매를 위해 사육장에 보관된 과세 대상의 개에 대해 채택된 조례에 의하여 부과될 수 있는 연간 건 조세의 최대 금액은 카운티 옵션 건 조세 또는 6마리 이상의 과세 대상 견을 사육, 탑승, 훈련 또는 판매용인 경우에는 50달러(\$50)에 해당하는 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거나, 번식, 탑승, 훈련 또는 판매용으로 6마리 이하의 과세 대상 견의 경우에는 30달러(\$30)의 개 세금 중 작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견 보유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IC 6-9-39 제3c조제1항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카운티 옵션 견 세금보고에 사용할 수 있는 카운티 선택 견 세금신고서를 규정하여야 하고, 카운티의 재정기관은 과세 대상 개를 은닉하거나 기르는 사람에게 완전하고 정확한 카운티 옵션 견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카운티의 회계기관은 각 과세 대상 견에 대해 징수된 세금에서 75센트(\$0.7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계 기관이 결정한 금액으로 수수료를 보유할 수 있으며, 카운티 재정 지정인은 매월 10일까지 징수한 잔액을 카운티 재무기관에

게 송금해야 한다(IC 6-9-39제5조).

카운티의 재무기관이 제3조에 따른 조례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카운티 옵션 견 세금기금을 설립 하여야 하고, 카운티 옵션 개세금기금이 설립시 카운티 옵션 개세금기금 내에 견 연구 및 교육 계정을 개설해야 한다(IC 6-9-39제6조(a)(b)). 역년말에 지방자치단체의 옵션 개세금기금에 있는 금액은 카운티의 일반 기금으로 전환할 수 없다(IC 6-9-39제6조(a)(d)). 카운티 옵션 개세금 수입을 받는 카운티 재무기관은 개 연구 및 교육 계정에 대한 20%, i) 동물보호시설의 사용, ii) 죽은 동물 처리를 포함한 동물통제, iii) 가축 도살에 대한 농부들에 대한 상환, iv) 예방접종 후 광견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보상의 용도에 80%를 할당하고 예치하여 견세금기금을 운용한다(IC 6-9-39제7조(a)(c)). 인디애나주 일반기금 내에 특별 견 연구 및 교육 계정이 설정되어야 하고, 카운티 개 연구 및 교육 계정에 축적된 금액은 주 재무기관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주에 발행된 주 일반기금의 개 연구 및 교육 계정에 예치되어야 하며, 회계연도 말에 개 연구 및 교육 계정에 남아 있는 수익금은 주 일반기금으로 반환되지 않는다(IC 6-9-39제7조(b), 제8조(a)(c)). 주 재정 기간 동안 견 연구 및 교육계정에 예치된 금액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이 개 연구 및 교육 계정에서 매년 퍼듀대학교 수 의과대학의 견 질병연구 및 교육에 충당된다(IC 6-9-39제8조(d)).

2. 독일의 반려동물 보유세법

독일기본법 제105조제2a항에서는 “주는 지역적 소비세와 사치세에 관하여 그것이 연방법률로 규정된 조세와 동종이 아닌 한 그리고 그 범위에서, 입법권을 가진다. 주는 토지취득세의 세율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보유에 따른 세금법을 자율적으로 입법할 수 있으며, 견 세금법에 의하여 지역적 소비세·지출세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시에서는 개인 목적으로 자연인이 개를 키울 경우 생후 3개월이 되는 달의 1일부터 또는 한 가구에 입양된 달의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각 개에 대해 역년당 세금 €102, 위험한 개⁶⁾에 대해서는 세금 €900을 부과·징수한다(프랑크푸르트 암마인시 개세금법 제

6) 영구적으로 위험한 개는 반복적으로 사나운 것으로 판명된 개, 공격성 또는 정상 수준을 넘어서는 전투 의지, 예리함 또는 동일한 효과를 갖는 기타 번식 특성을 위해 사육 또는 훈련 또는 훈련된 개를 포함한다. 위험한 방식으로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점프하거나 다른 동물을 공격하고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주의를 끈 개도 영구적인 위험한 견으로 간주된다. 공격성과 위험이 증가된 개도 영구적으로 위험한 견으로 간주되며, 이들은 다음 품종 또는 그룹의 개 및 서로 다른 품종, 그룹 또는 잡종 개와 교배된 개다. 즉, 핏불 테리어 또는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또는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불 테리어, 아메리칸 불독, 도고 아르헨티노, 캥갈(카라바시), 코카서스 오브차카, 로트와일러 등이다..

3. 네덜란드의 반려동물 보유세법

대부분의 네덜란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의 개의 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연간 개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개의 수가 늘어날수록 개 세금은 무겁게 부과되고 있다. 모든 반려동물 중 개에 대해서만 견세를 부담한다. 개를 보유한 사람은 14일에서 3개월 사이에 지방자치단체와 네덜란드 세무관청에 직접방문하거나 양식을 작성해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네덜란드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등록한 개가 있는지, 등록되지 않은 개가 살고 있는지 방문조사하여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네덜란드 지방자치단체의 개 보유에 대한 세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며 평균 연간 개 1마리당 76유로(2018년보다 1유로 증가)가 개 보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⁷⁾ 네덜란드에서 높은 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흐로닝언(Groningen, 첫 번째 개 124.8유로, 두 번째 개 180유로), 헤이그(The Hague, 첫 번째 개 120.12유로, 두 번째 개 310유로, 세 번째 개 550유로), 헨드릭 이도 암바흐트(Hendrik Ido Ambacht, 첫 번째 개 119.64유로, 두 번째 개 320유로, 세 번째 개 510유로, 개사육장 710유로), 네이메헌(Nijmegen, 첫 번째 개 115.16유로, 다음 개 170유로), 노르드wijk(Noordwijk, 첫 번째 개 112.56유로, 두 번째 개 170유로, 다음 개 1마리당 220유로, 사육장 480유로), 힐렌(Heerlen, 첫 번째 개 85유로, 두 번째 개 230유로, 다음 개 1마리당 450유로, 사육장 1,220유로), 코렌다이크(Korendijk, 첫 번째 개 85유로, 다음 개 1마리당 85유로, 사육장 430), 브룬섬(Brunssum, 첫 번째 개 75유로, 두 번째 개 150유로, 다음 개 1마리당 300유로, 사육장 1,000유로), 틸부르크(첫 번째 개 110유로, 두 번째 개 260유로, 다음 개 1마리당 180유로, 개집에 보관된 개 340유로)이다.

네덜란드의 개에 대한 조세부과징수금은 일반기금으로 사용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 분뇨를 퇴치하거나 청소하는 데 사용할 필요가 없고, 지방의회는 조례에 의하여 공원, 개 산책 구역 및 자연 보호 구역의 유지 관리, 개 성가심 퇴치(예: 개 분뇨 치우기 또는 싸움)에 사용되고 있다.

4. 시사점

미국, 독일, 네덜란드의 반려동물 보유세와 관련하여 반려동물중 개에 대하여만 보유세를 부과하

7) 다만, 네덜란드의 147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 세금을 면제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라이덴, 알메르, 자이스트, 델프트 등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오래 전부터 존재하던 견세를 징수가 어려워 폐지하였다.

고 있다. 미국 인디애나주법상 개 세금은 개의 수에 따라 보유세를 달리하고 있고, 개세금법에 의해 부과징수한 재원을 개 연구 및 교육, 동물보호 등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개세금기금과 개연구·교육기금으로 편성하여 그 재원의 사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강아지가 3개월되거나, 개를 1개월 이상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게 하고 개의 보유의 수, 위험한 개인지에 따른 세율을 연간세로 차등과세하고, 경찰견, 장애인의 보호견, 구조견은 면세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개를 입양한지 14일에서 3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게 하고 개의 보유수에 따라 차등과세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보유관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과세하고 있다.

Part
IV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법적과제**

1. 반려동물 보유세 과세대상과 공평과세 확보 방안
2. 지방세법을 통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Part IV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법적과제

1. 반려동물 보유세 과세대상과 공평과세 확보 방안

개, 고양이(묘), 관상어, 햄스터, 흰족제비, 애완용 새, 토끼, 파충류 등⁸⁾ 반려동물 보유세의 과세 대상은 나라마다 처한 특성과 환경에서 입법자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법률로 정하고 있다. 다만, 반려동물 보유세의 과세대상을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재산권의 본질적인 사항을 침해한다거나 비례원칙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반려동물 중 반려견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데⁹⁾, 이는 반려견 보유의 억제와 광견병 등 그 밖의 감염병의 방지, 지방자치단체의 반려동물 기반시설 확충, 예방접

8) 가금류와 영장류는 반려동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9) 독일, 네덜란드에서 광견 물림의 광견병 억제에 위한 개 보유제한과 사치품으로 여겨 19세기부터 지금껏 과세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길거리에서의 개 배설물,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소음피해, 다른 동물이나 사람 위협과 상해(살해), 개털로 인한 알레르기 등 오염원인부담원칙에 의하여 개에 대하여 지역지출세로 조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고양이는 농장에서 쥐를 잡는 농장동물로 여겨져 인간의 사치품이 아니라 도우미로 보아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고양이가 새, 설치류 등 잡아먹어 생물의 다양성을 훼손하므로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종비 마련, 동물복지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다.¹⁰⁾ 미국의 경우 오하이오주, 뉴욕주, 메인주, 텍사스주, 위스콘신주 등 대부분의 주에서는 반려견에 대해 반려동물세 보유세를 과세하고, 워싱턴주 등 일부 몇몇 주에서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에 대해서도 유럽의 입법취지와 같은 맥락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과세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다.

고양이와 비교하여 개는 아기, 어린이 및 노약자 등에 대한 개물림사고를 통해 사상자를 발생시킬 수 있고 광견병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의 보유 수를 억제하기 위하여 개를 과세대상으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고, 점진적으로 사회적 합의와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고양이도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고양이는 개와 달리 종종 도시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고양이 주인은 개 주인처럼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광견병에 걸리지 않게 하므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동물보호법에 의하여 고양이도 등록하고 있고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도 개에 대하여만 보유세 내지 지역적지출세(Aufwandsteuer)¹¹⁾를 부과하는 것이 공평과세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독일 비스바덴행정법원은 “개 세금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재정 능력 증가를 나타내는 생활 상황에 세금을 부과하는 지역적지출세이다. 개를 기르는 것은 일반적인 생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 이상이며 추가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를 위한 음식, 관리 및 필요한 경우 수의학적 관리 비용을 부담하며, 이 비용은 일반적인 생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이상이므로 과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¹²⁾ 개에 대하여 과세하고 취미로 기르는 다른 동물을 기르는 것에 대하여 비과세하더라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관할 입법부가 개 사육에만 세금을 부과하거나 다른 동물의 사육에도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동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 독일 기본법상의 평등의 일반원칙은 입법부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자의적으로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며, 입법부가 만든 합리적이고 사실적인 이

10) 개에만 반려동물 보유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보유세를 부과하고 고양이에 대하여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공평과세 원칙에 위반한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개에 대하여만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공평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다.

11) 이동식, 독일의 지방세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161면.

12) OVG Saxony-Anhalt, vom 2010.6.22 -4K252/08; BVerwG, vom 2006.11.2.- 10 B 4/06.

유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만 위반된다. 개는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말, 고양이 및 기타 동물에 의한 것보다 훨씬 더 크며, 보도, 어린이 놀이터 및 기타 공공시설 등 개 배설물이 있는 시설의 더러움으로 인한 손상, 개가 짖는 소리로 인한 소음공해 등이 있으므로 반려동물 중 개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다.”라고 판시¹³⁾하였다.

즉, 반려동물중 개에 대하여만 보유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개 분뇨로 인한 거리 청소비용증가, 공원 등의 개 편의시설 확충 등이 요구되고 있고, 개가 유발하는 성가심의 정도는 다른 동물과 질적, 양적으로 다르므로 형평과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다만, 개 등록 시 마이크로 칩을 부착하여 개 보유에 따른 형평과세가 되도록 과세하여야 하고, 연간 2회 정도 모니터링하여 개의 보유 수, 위험한 견인지, 구조견, 탐색견, 장애인 보호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과세하여 공평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2. 지방세법을 통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으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고, 지방세법을 통해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세금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을 통해 축견세를 도입한 바 있으므로 지방세법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세물건,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¹⁴⁾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의 편의시설, 보호시설 등의 인프라의 확충, 개 분뇨의 제거비용, 개 연구 및 교육, 광견병 걸린 개물림 사고에서 예방접종자에 대한 손실보상 등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보유세를 지방세법에 신설하여 시·군·구세로 도입하여야 한다. 반려동물 보유세의 과세대상은 개를 기른지 3개월이 넘는 달의 1일부터 해당 주민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하도록 하고, 개 보유의 억제를 위하여 독일과 네덜란드 수준으로 개의 보유 수 및 위험견인지에 따라 차등과세하고, 구조견, 추적견, 장애인 보호견에 대하여 면세할 필요가 있다.

13) VG Wiesbaden, vom 2017.6.13. - 1 K 919/16.WI.

14) 우리나라는 1946년~1948년에 지방세로 축견세가 부과되고, 1949년 지방세법 제정으로 서울특별시에서 견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축견세를 1두에 100원을 납부하였다. 축견세는 1951.6.2. 지방세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지방세법상 목적세로 도입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¹⁵⁾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서는 보통세로 과세하고 해당 재원으로 개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보통세로 과세하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견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도입하여 네덜란드와 같이 계정과 사용재원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세법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조례로 50%범위(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100%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현재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용이 요구되고 있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방세수의 감소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과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지방세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불충분한 재정을 확충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15) 이창규, 반려견세 도입을 위한 서론적 연구—독일의 개보유세(Hundesteuer) 현황과 게마인데(Gemeinde)稅를 기초로—, 세무와 회계 연구 제9권제3호, 2020, 363면.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

농림축산식품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는 로드맵 마련 -, 보도자료, 2020.1.15.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638만가구에서 반려동물 860만 마리 키운다-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 보도자료, 2021.4.23.

이동식, 독일의 지방세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이창규, 반려견세 도입을 위한 서론적 연구—독일의 개보유세(Hundesteuer) 현황과 게마인데(Gemeinde)세를 기초로—, 세무와 회계연구 제9권제3호, 2020.

OVG Saxony-Anhalt, vom 2010.6.22 -4K252/08;BVerwG, vom 2006.11.2.- 10 B 4/06.

VG Wiesbaden, vom 2017.6.13.- 1 K 919/16.WI.

| 지방재정법제이슈 22-20-③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의 법적 과제

발행일 2022년 10월 14일

발행인 김계홍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 044. 861. 0300 | F. 044. 868. 9913

등록번호 1981. 8. 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 지방재정법제이슈 22-20-③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의 법적 과제



발행일 2022년 10월 14일 | 발행인 김계홍 |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www.klri.re.kr)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15 한국법제연구원 재정혁신법제팀
TEL (044) 861-0300 FAX (044) 868-9915

